

신제주 동문디이스트 시그니처원 I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11-8838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6.2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제주특별자치도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6.23.(화)	2026.07.03.(금)	2026.07.06.(월)	2026.07.10.(금)	2026.07.15.(수)~ 2026.07.17.(금)	2026.07.21.(화)~ 2026.07.23.(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되어 미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필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공정율 63.21%)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와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신제주시그니처원.kr>)에 공개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6.23.(화)**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가(**2025.06.2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 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7.03.(금)	2026.07.06.(월)	2026.07.10.(금)	2026.07.15.(수)~ 2026.07.17.(금)	2026.07.21.(화)~ 2026.07.23.(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51-65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 없음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주택과 34898호(2026.06.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74-12번지외 4필지 ■ 공급규모 :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15층 1개동 총 18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2026000288	01	061.3324	61	61.3324	18.3905	79.7229	52.3100	132.0329	13.5092	1	1	1
	02	063.4466	63	63.4466	18.8451	82.2917	54.1132	136.4049	13.9749	13	13	1
	03	075.6023	75	75.6023	21.7569	97.3592	64.4808	161.8400	16.6523	13	13	1
	04	076.0381	76	76.0381	22.0519	98.0900	64.8525	162.9425	16.7483	13	13	1
	05	084.8915A	84A	84.8915	24.9720	109.8635	72.4035	182.2670	18.6983	87	87	4
	06	084.9317B	84B	84.9317	23.9432	108.8749	72.4378	181.3127	18.7072	13	13	0
	07	108.9054	108	108.9054	30.7683	139.6737	92.8849	232.5586	23.9877	13	13	1
	08	113.1510	113	113.1510	32.5388	145.6898	96.5060	242.1958	24.9228	14	14	1
	09	115.0757	115	115.0757	31.4628	146.5385	98.1476	244.6861	25.3468	13	13	1
	10	156.0508	156	156.0508	44.8777	200.9285	133.0951	334.0236	34.3720	2	2	0
합 계										182	182	11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11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 세대(182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건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주택형	061.3324	063.4466	075.6023	076.0381	084.8915A	084.9317B	108.9054	113.1510	115.0757	156.0508
약식표기	61	63	75	76	84A	84B	108	113	115	156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라인	층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1회(20%)	2회(20%)	3회(20%)	입주시
								계약시	2026.09.23.	2026.11.23.	2027.01.23.	
61	1호	2층	1	324,000,000	396,000,000	-	720,000,000	72,000,000	144,000,000	144,000,000	144,000,000	216,000,000
63	9호	2층	1	338,850,000	414,150,000	-	753,000,000	75,300,000	150,600,000	150,600,000	150,600,000	225,900,000
	9호	3층	1	349,650,000	427,350,000	-	777,000,000	77,700,000	155,400,000	155,400,000	155,400,000	233,100,000
	9호	4층~5층	2	349,650,000	427,350,000	-	777,000,000	77,700,000	155,400,000	155,400,000	155,400,000	233,100,000
	9호	6층~8층	3	360,450,000	440,550,000	-	801,000,000	80,100,000	160,200,000	160,200,000	160,200,000	240,300,000
	9호	9층~11층	3	371,250,000	453,750,000	-	825,000,000	82,500,000	165,000,000	165,000,000	165,000,000	247,500,000
	9호	12층~14층	3	382,050,000	466,950,000	-	849,000,000	84,900,000	169,800,000	169,800,000	169,800,000	254,700,000
75	7호	2층	1	404,100,000	493,900,000	-	898,000,000	89,800,000	179,600,000	179,600,000	179,600,000	269,400,000
	7호	3층	1	416,700,000	509,300,000	-	926,000,000	92,600,000	185,200,000	185,200,000	185,200,000	277,800,000
	7호	4층~5층	2	416,700,000	509,300,000	-	926,000,000	92,600,000	185,200,000	185,200,000	185,200,000	277,800,000
	7호	6층~8층	3	429,750,000	525,250,000	-	955,000,000	95,500,000	191,000,000	191,000,000	191,000,000	286,500,000
	7호	9층~11층	3	442,800,000	541,200,000	-	984,000,000	98,400,000	196,800,000	196,800,000	196,800,000	295,200,000
	7호	12층~14층	3	455,400,000	556,600,000	-	1,012,000,000	101,200,000	202,400,000	202,400,000	202,400,000	303,600,000
76	8호	2층	1	411,300,000	502,700,000	-	914,000,000	91,400,000	182,800,000	182,800,000	182,800,000	274,200,000

76	8호	3층	1	424,350,000	518,650,000	-	943,000,000	94,300,000	188,600,000	188,600,000	188,600,000	282,900,000
	8호	4층~5층	2	424,350,000	518,650,000	-	943,000,000	94,300,000	188,600,000	188,600,000	188,600,000	282,900,000
	8호	6층~8층	3	437,400,000	534,600,000	-	972,000,000	97,200,000	194,400,000	194,400,000	194,400,000	291,600,000
	8호	9층~11층	3	450,450,000	550,550,000	-	1,001,000,000	100,100,000	200,200,000	200,200,000	200,200,000	300,300,000
	8호	12층~14층	3	463,500,000	566,500,000	-	1,030,000,000	103,000,000	206,000,000	206,000,000	206,000,000	309,000,000
84A	2, 3호	2층	2	446,400,000	545,600,000	-	992,000,000	99,200,000	198,400,000	198,400,000	198,400,000	297,600,000
	1, 2, 3호	3층	3	460,800,000	563,200,000	-	1,024,000,000	102,400,000	204,800,000	204,800,000	204,800,000	307,200,000
	1, 2, 3, 4호	4층~5층	8	460,800,000	563,200,000	-	1,024,000,000	102,400,000	204,800,000	204,800,000	204,800,000	307,200,000
	1, 2, 3, 4호	6층~8층	12	485,100,000	592,900,000	-	1,078,000,000	107,800,000	215,600,000	215,600,000	215,600,000	323,400,000
	1, 2, 3, 4호	9층~11층	12	499,500,000	610,500,000	-	1,110,000,000	111,000,000	222,000,000	222,000,000	222,000,000	333,000,000
	1, 2, 3, 4호	12층~14층	12	513,900,000	628,100,000	-	1,142,000,000	114,200,000	228,400,000	228,400,000	228,400,000	342,600,000
	1호	15층	1	528,750,000	646,250,000	-	1,175,000,000	117,500,000	235,000,000	235,000,000	235,000,000	352,500,000
	10, 11호	2층	2	455,850,000	557,150,000	-	1,013,000,000	101,300,000	202,600,000	202,600,000	202,600,000	303,900,000
	11, 12호	3층	2	470,250,000	574,750,000	-	1,045,000,000	104,500,000	209,000,000	209,000,000	209,000,000	313,500,000
	10,11,12호	4층~5층	6	470,250,000	574,750,000	-	1,045,000,000	104,500,000	209,000,000	209,000,000	209,000,000	313,500,000
	10,11,12호	6층~8층	9	485,100,000	592,900,000	-	1,078,000,000	107,800,000	215,600,000	215,600,000	215,600,000	323,400,000
	10,11,12호	9층~11층	9	499,500,000	610,500,000	-	1,110,000,000	111,000,000	222,000,000	222,000,000	222,000,000	333,000,000
	10,11,12호	12층~14층	9	513,900,000	628,100,000	-	1,142,000,000	114,200,000	228,400,000	228,400,000	228,400,000	342,600,000

84B	13호	3층	1	475,650,000	581,350,000	-	1,057,000,000	105,700,000	211,400,000	211,400,000	211,400,000	317,100,000
	13호	4층~5층	2	475,650,000	581,350,000	-	1,057,000,000	105,700,000	211,400,000	211,400,000	211,400,000	317,100,000
	13호	6층~8층	3	490,050,000	598,950,000	-	1,089,000,000	108,900,000	217,800,000	217,800,000	217,800,000	326,700,000
	13호	9층~11층	3	504,900,000	617,100,000	-	1,122,000,000	112,200,000	224,400,000	224,400,000	224,400,000	336,600,000
	13호	12층~14층	3	519,750,000	635,250,000	-	1,155,000,000	115,500,000	231,000,000	231,000,000	231,000,000	346,500,000
	13호	15층	1	534,150,000	652,850,000	-	1,187,000,000	118,700,000	237,400,000	237,400,000	237,400,000	356,100,000
108	5호	2층	1	597,150,000	729,850,000	72,985,000	1,399,985,000	139,998,500	279,997,000	279,997,000	279,997,000	419,995,500
	5호	3층	1	616,050,000	752,950,000	75,295,000	1,444,295,000	144,429,500	288,859,000	288,859,000	288,859,000	433,288,500
	5호	4층~5층	2	616,050,000	752,950,000	75,295,000	1,444,295,000	144,429,500	288,859,000	288,859,000	288,859,000	433,288,500
	5호	6층~8층	3	634,950,000	776,050,000	77,605,000	1,488,605,000	148,860,500	297,721,000	297,721,000	297,721,000	446,581,500
	5호	9층~11층	3	654,300,000	799,700,000	79,970,000	1,533,970,000	153,397,000	306,794,000	306,794,000	306,794,000	460,191,000
	5호	12층~14층	3	673,200,000	822,800,000	82,280,000	1,578,280,000	157,828,000	315,656,000	315,656,000	315,656,000	473,484,000
113	14호	2층	1	586,350,000	716,650,000	71,665,000	1,374,665,000	137,466,500	274,933,000	274,933,000	274,933,000	412,399,500
	14호	3층	1	605,250,000	739,750,000	73,975,000	1,418,975,000	141,897,500	283,795,000	283,795,000	283,795,000	425,692,500
	14호	4층~5층	2	605,250,000	739,750,000	73,975,000	1,418,975,000	141,897,500	283,795,000	283,795,000	283,795,000	425,692,500
	14호	6층~8층	3	652,950,000	798,050,000	79,805,000	1,530,805,000	153,080,500	306,161,000	306,161,000	306,161,000	459,241,500
	14호	9층~11층	3	672,300,000	821,700,000	82,170,000	1,576,170,000	157,617,000	315,234,000	315,234,000	315,234,000	472,851,000
	14호	12층~14층	3	692,100,000	845,900,000	84,590,000	1,622,590,000	162,259,000	324,518,000	324,518,000	324,518,000	486,777,000
	14호	15층	1	711,450,000	869,550,000	86,955,000	1,667,955,000	166,795,500	333,591,000	333,591,000	333,591,000	500,386,500

115	6호	2층	1	608,850,000	744,150,000	74,415,000	1,427,415,000	142,741,500	285,483,000	285,483,000	285,483,000	428,224,500
	6호	3층	1	628,200,000	767,800,000	76,780,000	1,472,780,000	147,278,000	294,556,000	294,556,000	294,556,000	441,834,000
	6호	4층~5층	2	628,200,000	767,800,000	76,780,000	1,472,780,000	147,278,000	294,556,000	294,556,000	294,556,000	441,834,000
	6호	6층~8층	3	647,550,000	791,450,000	79,145,000	1,518,145,000	151,814,500	303,629,000	303,629,000	303,629,000	455,443,500
	6호	9층~11층	3	666,900,000	815,100,000	81,510,000	1,563,510,000	156,351,000	312,702,000	312,702,000	312,702,000	469,053,000
	6호	12층~14층	3	686,250,000	838,750,000	83,875,000	1,608,875,000	160,887,500	321,775,000	321,775,000	321,775,000	482,662,500
156	212호	15층	2	1,020,150,000	1,246,850,000	124,685,000	2,391,685,000	239,168,500	478,337,000	478,337,000	478,337,000	717,505,5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 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유상옵션 전체 품목이 미포함되어 있으나, 현장 공정상 이미 설치완료 하였으므로 반드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의 책임이 아님)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동출입구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은 기타공용면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북쪽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3m) 조성 방식 변경 등 인허가 과정에 따라 식재 디자인 및 수종 계획이 삭제 또는 수정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입주예정월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불가피한 설계 변경 사항으로 수분양자는 이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청약홈을 통해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분양가에 계산이 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계약 홈페이지 내 단위세대,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부적격자 판명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이 단축될 경우 공급대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되는 입주예정일에 따라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잔금은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지반(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정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보강토 블록, 조경용 석축 등 포함)의 형태 및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진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입주 시 잔금대출을 신청하실 경우,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잔금대출 실행 시 기존주택 처분 및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 보증받은 아파트(공동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 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4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제주특별자치도 1년 미만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명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당첨확인
일반공급	1순위	2026.07.03(금) 09:00~17:30	• '청약홈'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일시 : 2026. 07. 10(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2순위	2026.07.06(월) 09:00~17:3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7.10.(금) ~ 2026.07.19.(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7.10.(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정	서류 제출 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2026.07.15.(수) ~ 2026.07.17.(금) (3일간) 10:00 ~ 17:00 (※ 사전 방문예약제를 통한 견본주택 방문 접수)	■ 당사 견본주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51-65번지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홈페이지 : https://신제주시그니처원.kr
예비 입주자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 구비서류는 하기 구비서류 참고하시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 및 계약체결 시 당사 홈페이지 (<https://신제주시그니처원.kr>)를 통해 '사전방문 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예비 입주자는 예비순번 순 등으로 서류접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제출일정,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 (<https://신제주시그니처원.kr>)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 합니다.(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서류 미제출 시 계약 포기로 간주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서약서	본인	• 당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 일반공급 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청약신청(정보취약계층) 및 계약 불가
	○		인감 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한 해외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가정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점제 (추가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위임장	본인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무주택 소명 등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원,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 현황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 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재외 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3.)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비서류의 제출은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7.21.(화) ~ 2026.07.23.(목) / 3일간 10:00~16:00	· 당사 견본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51-65	1811-8838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당첨 효력 상실)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 사항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금 확인증, 캡처 등)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으로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대리인 계약 불가

	④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⑤ 정부수입인지 (※분양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각각 발급)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세액기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또는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⑥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포함)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대리인 계약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계약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 대리계약 시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본인발급용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도장(또는 대리인 서명)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분양사업소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계약체결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 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별도 납부대상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항 납부지연가산세의 내용에 따라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대상 증서	1.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 도급 증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납부 기한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매 :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 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 금액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비고	*발코니 및 추가옵션 계약			*아파트 공급계약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부산은행	101-2086-2401-02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1차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계약 체결 시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을 확인 후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지정된 계약기간 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③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사업주체 비치)" 작성을 통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아니다.
-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계약자 대출 안내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알선조건은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에 60%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 사업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세대당 2건(기존 보증 이용건수 합산)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법률의 변경 및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주택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제한, 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시행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조건 제한 및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대출취급기관(알선 시)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관련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시행위탁자 등은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출 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행위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행위탁자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시행위탁자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중도금 납부 약정일자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시행위탁자 등에 분양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 등은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및 금융기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미제출 시 시행위탁자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자에게 대출비용 축소 및 대출불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행위탁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는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세대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점 이후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제48조의2 「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03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입주 예정 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1개월 전에 입주 가능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의2 2항에 의거,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45일 이상의 입주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 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 부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의 구성(관리사무소, 통신실 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9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61	49,390,000	4,939,000	44,451,000
63	29,040,000	2,904,000	26,136,000
75	40,920,000	4,092,000	36,828,000
76	53,020,000	5,302,000	47,718,000
84A	72,600,000	7,260,000	65,340,000
84B	60,610,000	6,061,000	54,549,000
108	66,110,000	6,611,000	59,499,000
113	71,830,000	7,183,000	64,647,000
115	48,070,000	4,807,000	43,263,000
156	132,220,000	13,222,000	118,998,000

■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 잔금	부산은행	101-2086-2402-09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발코니확장공사 내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에 따라 본 아파트는 공정률 63.21% 이상 완료된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미확장 세대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금액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입금증을 현장·분양 사무실에 계약 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현장·분양 사무실에서는 직접 수납하지 않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2동 201호 계약자 → '102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시행 수탁자,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02.18. 개정 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사이버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형태, 위치, 규격, 사양, 색상, 열림(개폐)방향 등은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 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층세대 바닥 배관으로 인하여 천장 일부 구간에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① 유상 옵션 품목(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표기	설치대수	구성 및 모델(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61	3	세대 거실 : AJ072BN1PBC1(113, 156타입 제외) 113, 156타입 거실 : AJ052BN1PBC1 세대 침실 : AJ020BN1PBC1 108, 113, 115 안방 : AJ023BN1PBC1 113 주방 : AJ040BN1PBC1 156 주방,가족실,안방 : AJ032BN1PBC1	삼성전자	4,950,000	495,000	4,455,000
63	3			4,950,000	495,000	4,455,000
75	4			6,600,000	660,000	5,940,000
76	4			6,600,000	660,000	5,940,000
84A	4			6,600,000	660,000	5,940,000
84B	4			6,600,000	660,000	5,940,000
108	4			6,600,000	660,000	5,940,000
113	5			8,250,000	825,000	7,425,000
115	4			6,600,000	660,000	5,940,000
156	7			11,550,000	1,155,000	10,395,000

- 시스템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타입별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다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냉매 매립 배관(거실+침실1) 및 관련 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 배관만 시공됨.(천장형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 배관 및 드레인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 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생산, 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는 미설치됨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 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함.
- 건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은 건본주택용 냉,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유상)선택 품목의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사양과 상이하므로 계약 전 선택 제품의 사양과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람.

② 선택 옵션 품목(유상옵션)

(단위 : 천원, VAT 포함)

적용품목	품 목 명	회사명	비고	61	63	75	76	84A	84B	108	113	115	156
프리미엄 마감재	세라믹 바닥타일(거실, 주방, 복도, 팬트리, 알파룸, 현관, 창고)	TECHLAM (호준하우징)	61,63,75타입 은 복도 세라믹 아트월 적용 x	3,960	3,850	4,290	4,400	4,950	4,620	6,050	6,270	5,610	8,800
	세라믹 아트월(거실, 복도)			3,080	3,080	3,080	4,070	3,630	4,070	4,070	4,070	4,070	7,700
	세라믹 벽, 상판(주방)			3,080	3,300	3,300	3,520	3,740	3,740	3,740	3,740	3,740	4,950
	유럽산 타일(욕실)			1,397	3,410	3,410	3,410	3,520	3,520	3,520	3,520	3,520	5,060
	비데일체형 양변기, 외산 세면기	CISAL (호준하우징)		770	1,540	1,540	1,540	1,540	1,540	1,540	1,540	1,540	3,916
	외산 무광수전, 외산 욕실 악세서리			1,661	2,068	2,068	2,068	2,068	2,068	2,068	2,068	2,068	2,970
중문	알파룸 슬라이딩 도어	알루인터						715			1,045		4,070
가전	독립형 렌지후드	하츠 (에코스테이션)		429	429	429	429	429	429	429	429	429	429
	복합환풍기			715	715	715	715	715	715	715	715	715	715
	인덕션	삼성 (에코스테이션)		1,089	1,089	1,089	1,089	1,089	1,089	1,089	1,089	1,089	1,089
	식기세척기			869	869	869	869	869	869	869	869	869	869
	비스포크 냉장·냉동·김치냉장고			4,708	4,708	4,708	4,708	4,708	4,708	4,708	4,708	4,708	4,708
프리미엄 주방특화	프리미엄 외산 싱크볼	CISAL(호준하우징)		462	462	462	462	462	462	462	462	462	462
	무선충전콘센트	우버한트(미젠드)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프리미엄 독일산 하드웨어	HAFELE (에코스테이션)		2,508	2,706	2,893	2,893	4,092	4,004	8,063	5,984	4,103	8,063
프리미엄 조명특화	거실 직간접 라인조명, 아트월 간접조명, 주방 라인등, 주방 매입등 및 식탁 직.간접조명, 드레스룸 매입등	네오스라이트		2,090	1,980	2,266	2,310	3,520	3,080	3,795	4,290	3,850	6,380

■ 가구옵션 관련 유의사항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 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람.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에 면한 바닥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음.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아트월타일 유상옵션 선택 시 타일이 설치되는 거실 및 복도구간은 조명특화(간접조명) 옵션 선택에 따라 단천정 설치시 타일의 시공 높이는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타일 자재 특성에 따라 실제 타일의 무늬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 선택 시 거실 및 복도 단천정은 설치되지 않음.
- 타일 자재 특성에 따라 실제 타일의 무늬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색상과 입자가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가공 공법에 따라 평활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추가 선택 품목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람,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상판, 벽체, 아일랜드 상판 유상옵션 세라믹타일제품 특성상 패턴,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음매가 발생되고 견본주택에 설치 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강마루 시공 패턴 및 나누기도는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와 웅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침실1 고급드레스룸 유상옵션 선택시 판넬형 시스템가구에 면한 벽면의 벽지는 시공되지 않음.

■ 가전 옵션 관련 유의사항

- 제조사와 모델은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 가전 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주방 가전 옵션은 주택형별 선택 가능함.
- 인덕션3구 전기쿡탑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배관은 설치 되지 않음.(가스쿡탑 미설치)
- 인덕션3구 전기쿡탑 옵션 선택시 가스배관은 실외기실에 설치된 가스계량기까지만 설치됨.
- 인덕션3구 전기쿡탑 옵션은 주방특화 옵션과 동시 선택 불가함
- 추가 선택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람.
- 카다로그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다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주택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추가 선택 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금액	계약금 / 잔금	부산은행	101-2086-2503-00	코리아신탁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101동 506호 홍길동인 경우 '1010506홍길동')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장소에서 수납 불가)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시 시행위탁자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 대금에 대하여 공급주체는 소비자 상대 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1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사항이고,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스프링클러, 환기구, 등기구, 배선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 수량,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제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건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상품구성, 적용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공사 시작 이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계약변경 및 해제가 불가하며, 해지 시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10

단지 여건 등

※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본사업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신광로(20M도로)와 동측 연동8길 이면도로는 남측과 북측의 고저차 약 5.5M의 경사로 구간으로 세대별 배치상황에 따라 소음, 사생활권 등 환경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연동8길 북측코너에는 지하체에서 클린하우스를 운용중에 있어, 추후 이설 상황에 따라 인접한 세대의 경우 해충, 냄새 분진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소음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동측 연동8길 구간 및 단지 북,서측 코너에는 시 전주 및 전력, 통신선이 인접해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를 방문하시어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옹벽,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 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위치나 수량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 아파트 진·출입 도로(보도 포함), 단지 외부(경계) 도로 및 도로 선형,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허가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동의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주변 도로 및 인접 대지와 레벨 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외부 일부구간에 옹벽, 자연석쌓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 및 미관 구조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높이, 옹벽 마감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 불편, 일조, 조망,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수 있음으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측은 폭 11m도로 및 기존 상가건물과 인접하고 있어 일부세대에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은 기존건물(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하고 있어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은 폭 20m도로 및 기존건물(오피스텔)과 인접하고 있어 일부세대에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고, 도로경사로 인해 단지 1층레벨과 -1.5~+3.0m의 레벨차가 발생하며 서측 1층 근린생활시설 출입구를 통해 단지진입이 가능합니다.
- 단지 동측은 폭 10m도로 및 기존건물(상가, 오피스텔)과 인접하고 있어 일부세대에 차량통행 및 상가이용객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고, 도로경사로 인해 단지 1층레벨과 -1.6~+3.5m의 레벨차가 발생하며 동측 1층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및 지하1층 통로를 통해 단지진입이 가능합니다.
- 15층 옥상조경 중 일부 세대 전용공간으로 별도 구획되어 있으며 타 세대 입주민의 이용 및 접근이 제한됩니다.

■ 공용부/단지 내 환경

- 본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 위치 등) 등은 건축허가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지구내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소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DA(환기구) 등: 크기는 변동될 수 있음)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2층 외부옥상공간에는 외부휴게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일부 구간은 석재 및 뿔칠, 도장마감이며, 외벽 면의 기본 마감은 커튼월록 및 세라믹패널 시공되며 중정 내부 외부마감은 페인트로 시공되오니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단지의 배치 특성상 향별, 층별 차이, 세대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2.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 복리시설, D/A(환기구),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대,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4. 단지 내 주출입구, 주차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단지 북측 6,7호라인 지상층(2층세대 하부)에 차량출입구가 위치하여 단지내 중앙 지상차로를 통해 지하주차장 진입가능하며 인접한 저층세대는 단지내 차량진출입 및 보행자이용으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피해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상용차량 주차위치는 단지내 중앙차로에 위치하며 이로 인해 저층 일부세대는 비상용차량으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피해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주거복합 단지로, 저층부(주동 1층 및 지하1층(단지북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할 수 있으며, 입점하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소음, 진동, 냄새,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1층 및 지하2층 일부구역은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구획(36대)으로 적용됩니다.(주차대수는 인허가과정 및 실시공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하2층 주차장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구역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구역이며, 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전용구역은 안내표지판 및 노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주차공간은 지하2층(일부)~지하5층(282대)에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같이 사용하여 차량통행 및 주차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차대수는 인허가과정 및 실시공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서측에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관리실, 라운지카페)등이 위치하여 주민공동시설 인접한 상부세대(1~5호라인)는 주민공동시설 내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2층 13호 세대라인 측에 게스트하우스 2실이 위치하고 일부세대(12호,14호 세대라인)와 동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공용홀을 같이 사용하여 이용자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침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5층 주차장 남동측에 발전기실, 전기실 등이 위치하여 급배기를 위한 DA창호가 단지남측 외부 및 1층(1호세대라인)에 설치되어 냄새 및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 카달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 위치 및 크기, 마감재,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1층 북서측 및 남측외부에 지하주차장 환기시설 급배기를 위한 DA창호가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4,5,14호세대라인)는 냄새 및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 카달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 위치 및 크기, 마감재,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2층, 지하3층 북동측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위치에 따라 설치 대수는 각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지하1층 주차장 남서측에 설치될 예정이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무인택배함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 될 예정입니다.
- 주거용 전기차 충전소(급속5대, 완속12대)는 단지 지하1, 2층 주차장에 위치하며, 본 공사 시 일부 시설물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및 통로 유효 높이는 2.6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이 지하1층 주차장까지만 가능하며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진입은 불가하고, 소형택배차의 경우라도 주차구간에 주차는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간섭될 수 있습니다.
- 대지의 일부(240m², 향후 측량 및 가감속차로 시공 과정 등에서 일부 증감될 수 있음)에 진출입 등을 위한 가감속차로가 설치되고, 이와 관련하여 공유대지에 관한 등기에 가감속차로의 주무관리청인 제주시청을 관리자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해서 분양계약자(입주자)는 시행자, 시공자, 제주시청 등을 상대로 별도의 임료(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권 등 포함)청구 및 기타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의 청구나 민원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시 이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를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지상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추가적인 서류 등을 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상권 해제 전까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일체에 대해 입주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 및 마감사양(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부대시설 등), 외부시설물(문주, D.A(환기구),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 BI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사업주체협의를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층 및 라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층, 라인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보관시설은 지하1층 남측에 위치하여 세대별로 이용 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경우 해충, 냄새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용시설용 (주민공동시설) 배기시설 및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단지통행 입주민은 미관, 소음, 바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창에 입면분할창(별도 난간 없이 창호 자체가 구조적 역할을 하는 창호)이 설치되어 사다리차 접근 및 이용이 불가하며 입주 및 이사시 승강기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 구간,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 형태 등의 계획은 층, 라인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동의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색상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호수별 최고층수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같은 라인이라도 층별 공용홀의 구조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층, 라인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에 창호가 설치되는 경우 창호크기가 협소하거나 창호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개폐가 불가능한 창호로 시공됨. 단, 일부층에 한하여 개폐가 가능한 창호로 시공됩니다.
- 각 세대의 주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 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건본주택 모형 및 도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수목의 높이 및 직경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목 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 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5층 옥상조경 중 일부 세대 전용공간으로 별도 구획되어 있으며 타 세대 입주민의 이용 및 접근이 제한됩니다.
- 주동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 출입구, 지하 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실외 휴게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은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층, 라인별 세대별로 주차 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현재의 배치, 차량 동선에 의하여 층, 라인별 주차 배분, 동 출입구 개수, 출입 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 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기둥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 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부지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 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 및 동호수 사인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 내 교차로 끝부분은 점자 블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CCTV에 의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미술 장식품 설치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9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미설치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조경(식재, 조경시설 등 포함), 바닥포장, 저층부 외벽 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면적, 위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수량 등이 현장 시공 시 카달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 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 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부대 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입면 몰딩 및 일부 구간 석재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측벽 및 옥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눈부심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기타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登記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좌우대칭 평면이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 세대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세대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실외기실(별도 실구획)에 상,하부 교차 설치되며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물건 적치를 금지하며 항시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침실1 발코니 측에 설치된 실외기실은 하향식 피난구가 함께 설치되고 상부에는 기계환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 고정형 가구(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창호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실외기실, 발코니1, 발코니2 제외) 설치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음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실외기실, 발코니1, 발코니2)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으니 빨래 건조, 가슴기 등 사용 시에는 수시로 새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PVC재질로 설치되고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프레임사이즈, 손잡이, 색상 등)등은 본 공사 시 입찰을 통해 선정되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시공 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욕실 출입 시 문턱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 공사 시 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비내력 벽체는 실별에 따라 습식, 건식 또는 골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인쇄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충간 소음 등)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 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 배관 및 냉매 배관(드레인포함)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 안내서의 유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아트월 및 주방 상판, 벽체 등에 사용되는 세라믹타일(유상옵션)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패턴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 공사 시 제품의 특성상 상판 및 벽체는 접합부에 조인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색상 및 재질 변경 없음, 동급 이상 적용) 공장 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일반 가구,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마감재(내/외부)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나, 샤워부스 바닥 및 욕조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이 가구 등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및 욕실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 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 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1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는 주방 싱크대 하부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견본주택 설치 위치)에 시공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욕실, 발코니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금속 도어(현관 방화문, 실외기실도어, 하향식피난구 설치공간 출입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색상,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 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호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하절기에는 상시 개방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냉각수가 바닥에 고일 수 있음)
- 팬트리, 드레스룸 등 옵션 선택 사항에 따라 천정에 설치되는 조명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작동 스위치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방화지구에 따른 인접건물 화재 예방시설로 일부 세대 천정 내부로 통하여 건물외벽에 드렌처헤드가 설치 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비스포크 냉장고(유상옵션) 패널색상은 예시 제품이며, 입주 시점에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패널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입주시점에 제품의 출시, 단종으로 인하여 패널 색상 선택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실외기실 등에 완강기 설치로 인한 공간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임의 철거, 제거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세대에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라운지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은 입주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은 관계 법령(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 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준공 후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또한,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 복리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양 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 및 운동기구, 가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 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 세대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 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 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 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오니,

건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환기구, 소방감지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건본주택 내 임시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인·허가 도서 및 소방법 등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 가스 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본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용 조명,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욕실점검구, 스프링클러, 환기 장비 및 디퓨저, 위생기구류 설치 위치 등은 변경 될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조명, 스팟조명은 전사용이므로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욕실 점검구,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등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인조석, 욕조, 타일, 필름지포함) 및 제품은 시공 시기의 생산 여건 및 입찰결과에 따라 자재품질, 품귀, 생산 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질 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승강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본주택 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건본주택 건립 타입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 세대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단지모형의 주동 및 저층부의 입면의 색상, 형태, 조명 연출은 실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지 주변 상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배관, 배선 등과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저층부 외부 마감은 석재와 뿔칠, 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마감되며, 특화계획에 따라 입면의 디자인 및 마감자재의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및 도어는 건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동급제품으로 입찰을 통해 시공됨에 따라 건본주택에 설치된 브랜드, 유리 스펙, 표현문구 및 프레임,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치수 등은 실제 시공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일괄 소등 스위치, 월패드, 디지털 도어락, 현관 도어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각 평면은 옵션 사항을 적용하여 시공하였으며, 품목별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콘센트, 스위치, 조명 등의 타입 및 수량,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분야

-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실외기실에 설치되므로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 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노출 배수 배관으로 인한 미관 지장 및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에 우수 배수배관이 설치되어 우천 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전기 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에 따라 노출 설치되오니 사전에 건본주택의 노출된 부위를 확인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 소화기는 건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 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동파가 우려되는 공용부위 설비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공용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급수용 배관은 공배관으로 설치되며, 사용자가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 삽입 및 연결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욕실에는 배수를 위한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별 기계 환기 방식이 적용되며, 옵션 선택 시 기계환기 장치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기계환기용 미세먼지등 감지용 컨트롤러가 설치 될수 있으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 부위 및 공용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뢰침 및 피뢰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시설 설치를 위한 실외기실이 사용자에 따라 외부 조경 공간, 2층 외부공간에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 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제4항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 통신 설비의 협의 결과에 따른 설치 위치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가. 단지내에 기간 통신 사업자의 이동 통신 중계기 및 옥외 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나. 이동 통신 설비 설치 예정 위치 : 지하2층 주차장

■ 설계 관련 변경 사항

- 본 아파트의 기능 및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 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 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재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환풍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 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은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 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및 환기구(급/배기)는 본 공사 시 형태 및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내진능력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 최대지반가속도 0.141g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

- 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B1F	2.6m	2.6m
B2F~B5F	2.3m	2.3m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확인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식회사 비앤비도시개발, 시행수탁자인 코리아신탁(주), 시공사인 동문건설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공급받는자(분양계약자)인 “을”은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주식회사 비앤비도시개발과 수탁자 코리아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코리아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주식회사 비앤비도시개발임을 “을”(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이에 따라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은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비앤비도시개발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을”(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2.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을”(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주식회사 비앤비도시개발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 “을”은 이에 동의하고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3.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자 주식회사 비앤비도시개발 또는 시공사 동문건설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4.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5.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 “을”은 반드시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

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6. 위탁자 주식회사 비앤비도시개발 또는 매수인 “을”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7. 코리아신타(주)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주식회사 비앤비도시개발과 매수인(“을”)간에 또는 시공사 동문건설 주식회사과 매수인(“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타(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8.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계약 관련 명시 사항

- ① “시행위탁자”가 본 아파트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할 경우로서 수분양자가 “시행수탁자”로부터 위탁자 지위의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한다.
- ② “시공사”가 본 아파트의 시공사 지위를 양도할 경우 수분양자가 “시행수탁자”로부터 시공사 지위의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한다.
- ③ 장래에 발생할 본 아파트의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한다.
- ④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 채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되며,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내용※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6-104-0001400 호	일금일천사백팔십억오십칠만삼천원정 (₩ 148,000,573,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대상이 아닙니다.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 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금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

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 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령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범건축사사무소	(주)웅진엔지니어링	(주)웅진엔지니어링
금 액	1,180,000,000원	192,000,000원	286,000,000
사업자등록번호	220-81-41152	215-87-41360	215-87-41360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앤비도시개발	동문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0111-2937831	110111-8062418	110111-0368426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 해성2빌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5층 503호 (여의도동, 하남빌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층 (여의도동, 하남빌딩)

■ 주택전시관안내

주택전시관 및 현장(약도)	주택전시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51-65					
	현장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74-12번지외 4필지					
	운영시간	오전 10:00 ~ 오후 17:00					
	분양문의	1811-8838					
	주요일정	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기간	계약기간
		해당지역	기타지역				
	2026.07.03.(금)	2026.07.03.(금)	2026.07.06.(월)	2026.07.10.(금)	2026.07.15.(수) ~ 2026.07.17.(금)	2026.07.21.(화) ~ 2026.07.23.(목)	
홈페이지	https://신제주시그니처원.kr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공급(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공급(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최근까지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반영된 참고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